

우리나라의 ABS 대응 현황과 과제

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의 가치가 높게 평가됨에 따라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을 통한 경제발전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을 통해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개별국가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면서 국가 간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확보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10)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이하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국제 논의가 진행 중으로 이에 대한 국내 대응 방안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나고야의정서 협상과정에서 자원부국(제공국)과 자원빈국(이용국)의 입장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었고, 이들 간의 타협의 산물로서 나고야의정서는 지나치게 모호한 협정으로 탄생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나고야의정서의 모호함은 국내적 이행에 있어 자율성의 여지를 안겨줌과 동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해 논란의 여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국내 이행으로 인해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생물유전자원의 사전접근 승인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이하 "ABS"라 한다.) 대응은 주로 법체계, 생물유전자원 관리 체계, 생물유전자원 특허제도와 관련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체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나고야의정서 비준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이들 법령에서 유전자원이나 생물자원 등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관한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 국가는 자국 내 생물 유전자원의 발굴 확보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발빠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기 위해 국가별 유전자원의 DB 구성과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환경부, 해양수산부, 미

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이 분야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전담 관리기관들은 국제협력망을 마련하고 있어 그 관리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있는 편이지만 이들 기관들이 나고야 의정서가 요구하는 점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규정 마련과 지정은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강원대학교 홍형득 교수는 우리나라 ABS 대응정책을 점검 연구하면서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자원 제공국' 측면에서 준비가 잘 된 반면, '자원 이용국' 측면에서는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자원 이용국' 입장에서의 부처별 역할 조정과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전자원의 보전과 이용을 넘어서서 국제협력을 포괄하는 생물 유전자원 관리 및 이용전략의 수립을 강조하였습니다.

ABS는 생물유전자원 부국의 자원제공국 입장에서 생물유전자원 유래 특허에 대한 출처기재를 요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가 어떤 전략적 입장을 취할 것인지가 구체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박종원(2015).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입법추진동향과 과제." 『환경법연구』 37(1): 67-112.
홍형득·임홍탁·조은실(2013). "우리나라 우리나라 ABS 대응정책의 평가와 과제." 『기술혁신학회지』 16(2): 506-529.

글 대외협력부 정숙정

